

# 제187회 임시총회 재개정 법안 주요 내용

**사찰 관리 및 승계 명문화  
직영사찰관리인 임기보장  
1995년 이후 4년 승랍추가  
본사 주지 법계 종덕 이상  
법계로만 교역직 자격 심사  
법규위 행정 처분 관여 명시  
총회의원 불징계권 유지**

조계종 중앙총회(회장 보선)는 9월 19~20일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승려법 개정안, 지방중정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등 9개 제·개정안을 처리하고 2개 결의안을 도출했다.

### [사찰법 개정]

'사찰법'은 공찰, 사실사찰, 포교소, 산내암자 등으로 사찰을 구분했으며 일부 사찰 기능을 하고 있던 스님들의 거주공간인 '도굴'도 사찰에 포함시켰다. 또 주지 의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사찰 주지 임명 품성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2회에 한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창건주 권리 승계문제는 창건주 권리자의 도제(법건당), 은사, 사형사제, 사형사제의 도제에게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제 및 사형사제가 없을 경우 공찰로 귀속된다.

신도가 창건주일 경우 그 권리는 조계종 승려에 한해 승계되며 사망시 공찰로 귀속되도록 했다. 창건주 권리자가 타종단으로 이적 또는 탈종하거나 임의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찰로 귀속된다.

창건주의 권리는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중앙총회회장 추천 인사 2명, 호계원장 추천 인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중앙주지사위원회에서 중앙주 인정 여부를 심사하며 중앙주는 입적 시까지만 인정된다.

창건주 요건은 △사찰 창건 후 공찰 등록 △사지(옛 절터) 복원 후 공찰 등록 △미입주사찰의 종단 점유권 확립 △사실사찰의 공찰로 등록 전환 △쇄락 및 폐허한 공찰 사격 및 역할의 현격히 격상에 한정했다.

종단 승인 없이 임의로 매매, 양도시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가 내려지며 주지 추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계가 처해진다.

직영사찰법 개정  
직영사찰 관리인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직영사찰법이 개정됐다. 직영사찰 관리인은 업무평가 결과가 일정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기종이라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직영

사찰 관리인은 중앙총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직영사찰 지정도 종단 지침에 의해 종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정 가능하며 미입주사찰도 가능하도록 했다.

### [승려법 개정]

이와 함께 1995년 이후 4년간 승려 승랍기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승려법을 개정해 1995년 이후 사미, 사미계를 수지한 승려의 승랍기간은 비구계 또는 비구니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하되 종단 기본교육 이수기간 4년을 더하도록 했다.

또 승려분한신고 미비로 승적이 말소된 경우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말소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특별분한신고 제도는 폐지됐다. 또 부정확한 명칭으로 혼란을 불러온 예비승 명칭을 없애고 사미, 사미니 등으로 세분화해 명시했다.

### [지방중정법 개정]

교구본사 주지는 법계 종덕 이상, 연령 70세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말사 주지는 법계 종덕(정덕) 이상으로 결정됐다.

### [종무원법 개정]

이와 함께 주요 소임직을 결정하는 종무원법 또한 승랍과 세탑 자격

을 삭제하고 법계로만 규정했다. 말사 재산관리인을 1개월 이내 파견하는 데 3개월 이내로 변경했으며 명칭도 사찰관리인으로 변경됐다.

### [법규위원회법 개정]

법규위원회는 △승법의 종헌 위배여부, △승려법, 규칙과 행정처분 등의 종헌준법 위배여부 등을 심판하도록 돼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호계원의 징계심판을 비롯해 중앙선관위의 선거업무 등에 대해서도 법규위가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 처분의 경우 종헌과 종법에 위배되는 경우 대해 심판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규위원 자격을 강화해 중앙총회의원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에서 국장 이상 최소 2년의 재직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 [중앙총회의원 개정 부결]

중앙총회의원 정계 요건인 중앙총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중앙총회의원 재직 과반수 이상 동의로 총회의원 정계 요건을 완화하는 중앙총회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출석인원 54명 중 찬성 33명, 반대 21명.

### [호계원법, 법인법 차기 이월]

호계원장과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각 원장과 위원의 자격 규정을 법계 규정으로 일괄 변경하기 위해 차기 회기로 이월했다.

또 사찰이나 스님이 설립한 법인산하의 사찰을 종단에 등록하고 이후 관리에 대해 다루는 '법인법'과 종재조정협의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호계원법'은 11월 열리는 제 188회 차기 총회로 이월됐다.

### [선암사 교구본사 지정 해제]

조계종과 태고종이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인수중인 순천 선암사를 '제20교구본사'에서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안도 통과됐다. 선암사의 직영사찰 전환은 태고종과 협상이 마무리되고 교구본사로서의 위상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조계종 의례위원회가 결의한 한글 반야심경 표준의례를 동의했다.

### [코엑스 39층 빌딩 건축 반대, 서산대체 국가재향 복원]

조계종 중앙총회는 결사산대체 국가 재향 복원과 봉은사 앞 코엑스 내 39층 층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밖에 안건으로 상정된 '새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대한 결의문'은 종단과 행정안전부의 협의 추이를 지켜보며 재논의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 42대원 성취로 극락정토를 만들자



봉은사 중앙불사를 위한 관세음보살 42대원성취 다라니독송 3년 대정진기도 입제가 9월 21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입재식에는 3500여 불자들이 참여해 다라니독송 정근에 동참했다. 봉은사는 이날 입재를 시작으로 매일 관음재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천수경 108독송과 관세음보살 42대 진언 기도다. 3년 6개월간 진행된다.

입재에 앞서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은 소참법문으로 "불법을 수행하는 도량이 어느 날부터인가 공원과 관광지가 돼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전락했다"며 "봉은사를 다시 불법도량, 수행도량으로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화스님은 "기도를 할 때 내가 감동을 받아야 모든 불보살님들 감동을 시킬 수 있다"며 "구호나 시위가 아닌 감동으로 하는 기도야말로 나와 이웃,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조선시대 '선종수사

찰'로 불리는 등 수행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근대에 들어 강남 지역이 개발되며 수행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쇠퇴했다. 봉은사의 기도 정진은 수행풍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가 발표한 봉은사 대웅전 정면의 39층 높이의 건물 신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과도 닿아있다.

봉은사는 고층건물 신축으로 봉은사 조망권 침해 및 도량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 우려를 보이며 강남구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봉은사의 요청으로 제187회 임시총회에서는 신축계획안에 반대하는 조계종 중앙총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스님은 "이 다라니 독송 기도의 동참 물결이 이어져 봉은사로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란다"며 "남은 41개월 동안 기도가 원만하기 진행돼 불법이 넘치는 도량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 불자 한마음으로 평안하길**  
조계종 중앙총회 모인 화엄회(회장 성직·사진 오른쪽)와 법화회(회장 정민·사진 왼쪽)는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사진 가운데)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에 해외복지금 미화 3만 달러(한화 3500만원)와 12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는 4월 '화엄·법화회 선서화전'을 통해 모인 금액 중 일부이다. 화엄·법화회는 5월 26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승가복지금 1억원과 자비나눔기금 2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모인 화엄회(회장 성직·사진 오른쪽)와 법화회(회장 정민·사진 왼쪽)는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사진 가운데)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에 해외복지금 미화 3만 달러(한화 3500만원)와 12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는 4월 '화엄·법화회 선서화전'을 통해 모인 금액 중 일부이다. 화엄·법화회는 5월 26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승가복지금 1억원과 자비나눔기금 2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 분담금 올려달라 vs 생수 팔아줄게

**분담금 올려달라는 총무원에  
수익사업 협조조건 동결 요청**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장 원행)가 제18차 회의를 김제 금산사에서 9월 2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 의장 원행 스님의 첫 주재회의로 19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주지 스님들은 제17차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기획실장 정만 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또한 승려복지제도에 관한 토의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스님들의 의료비와 요양비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수혜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분담금 조정안 토의에서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주지 스님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만 스님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세계불교대회 개최와 관련해 종단부담금이 3억 5000여 만 원에 달해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 하

로는 논산훈련소 신축불사 추진현황과 논산훈련소 훈련병 수계식 지원의 건, 종교평화선언에 관한 건이 토의됐다.

승려복지제도에 관한 토의에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스님들의 의료비와 요양비 지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수혜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분담금 조정안 토의에서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주지 스님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만 스님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세계불교대회 개최와 관련해 종단부담금이 3억 5000여 만 원에 달해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 하



다고 설명했다. 주지스님들은 분담금 일괄 인상안과 교구본사별 인상안, 종단달력과 생수판매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동결하는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교구본사협의회 총무, 재무간사와 기획실장 스님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박규원 만평



개산의 빛 나눔의 가을

# 통도사 창건 제1366주년 개산문화대제

천년의 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창건 1366주년을 맞아 '개산의 빛 나눔의 가을'을 주제로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는 전시회와 음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2011년 10월 5일(수) 10:30 설법전

예경의 장	찬탄의 장	새싹의 장	나눔의 장
가사배견 10월 1일 ~ 10월 5일	BTN 음악회 10월 1일	영축사생대회 10월 2일	장터·체험행사 10월 1일 ~ 10월 5일
부도한다 10월 4일	작은음악회 10월 1일 ~ 10월 4일	재롱잔치 10월 3일	
괘불이운·헌공·법요식 10월 5일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허북면 통도사로 108 www.tongdosa.or.kr  
전화 : (055) 382-7182 팩스 : (055) 382-7196